

- 대구광역시달서구 구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
 일부개정조례안 -
 < 수정조문 대비표 >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6조(단원의 자격 및 선발) ① 합창단의 단원은 달서구에 거주하는 자로서 음악 활동에 관심이 많고 성악에 자질이 있는 자로 하며, 신규단원은 <u>25세 이상 55세</u> 이하의 자 중에서 모집한다.</p> <p>② ~ ⑤ (생략)</p>	<p>제6조(단원의 자격 및 선발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<u>19세 이상 60세</u> ----- -----.</p> <p>② ~ ⑤ (현행과 같음)</p>	<p>제6조(단원의 자격 및 선발) ① 합창단의 단원은 달서구에 거주하는 자로서 음악 활동에 관심이 많고 성악에 자질이 있는 자로 하며, 신규단원은 <u>25세 이상 55세</u> 이하의 자 중에서 모집한다.</p> <p>② ~ ⑤ (생략)</p>
<p>제7조(단원의 위촉) ① · ② (생략)</p> <p>③ 지휘자, 반주자, 트레너 및 솔리스트를 제외하고 단원의 활동 연령은 <u>60세</u>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로 하되, 합창단 활동에 지장이 없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1회에 한해 연장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.</p>	<p>제7조(단원의 위촉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지휘자, 반주자, 트레너 및 솔리스트를 제외하고 단원의 활동 연령은 <u>65세</u>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로 하되, 합창단 활동에 지장이 없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1회에 한해 연장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.</p>	<p>제7조(단원의 위촉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지휘자, 반주자, 트레너 및 솔리스트를 제외하고 단원의 활동 연령은 <u>63세</u>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로 하되, 합창단 활동에 지장이 없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1회에 한해 연장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.</p>

현행	개정안	수정안
<p>제8조(단원의 해촉)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4. <u>4회</u> 이상 연속하여 연습에 불참한 자</p> <p>5. (생략)</p> <p>부칙</p> <p><u>②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합창단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보고,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.</u></p>	<p>제8조(단원의 해촉) 1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부칙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	<p>제8조(단원의 해촉)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<u>3회</u> ----- -----</p> <p>5. (현행과 같음)</p> <p>부칙</p> <p><u>②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합창단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.</u></p>